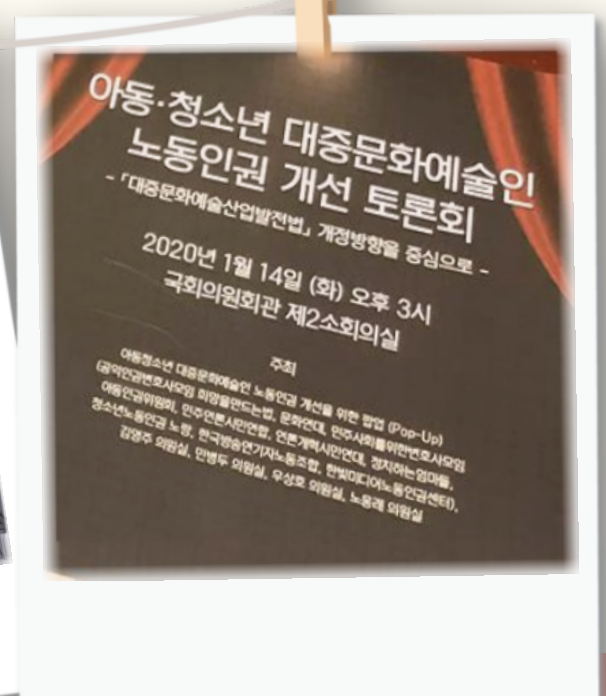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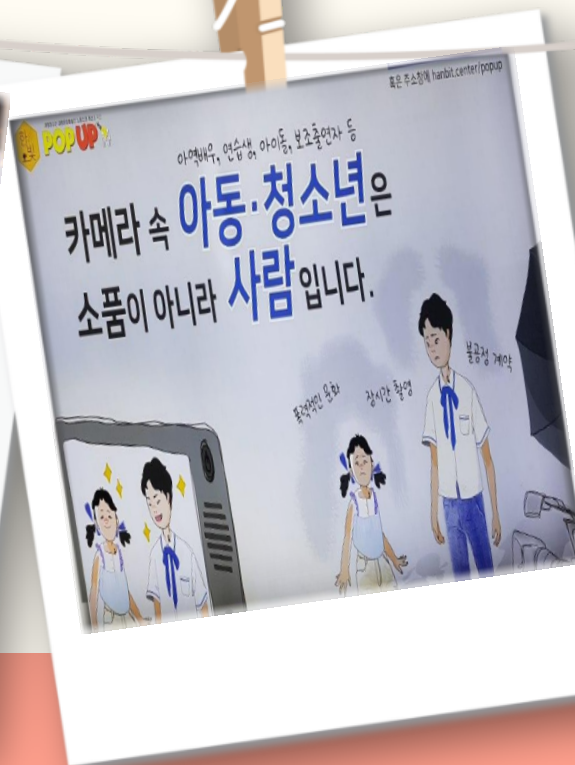


POPUP

카메라 속 아동·청소년을 위한 한걸음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!



카메라 속 아동·청소년들은?

“

극한의 환경 속, 아동·청소년의 꿈을 불모 삼아



출처 | 시사위크 '스크린 밖 아이들'

스크린 속 '아동·청소년 배우'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린 시절을 대신하는
'조연'에 머무르지 않고,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캐릭터로
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합니다.

하지만 성인 연기자도 감당하기 힘든 자극적이고,
폭력적인 상황에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."

”

카메라 속 아동·청소년들은?



1 장시간 촬영



2 프라이버시조차 없는 합숙 시스템



3 학습권, 노동권, 수면권 등의 침해



4 폭언 · 욕설 등 자극적 상황 노출

• 그래서, 팝업(POP-UP)이 뭉쳤다! •

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 없어
그동안 방치되었던 현장!

활동 4년차, 드디어!
구체적인 조항과 예방 대책을 담은
'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'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!

POP UP 

* 팝업 (POP-UP): 아동·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

기준 마련에서부터,

“

보호를 위한 방안까지!



노동권

* 촬영 시간 제한 및
야간 용역 제공 제한



학습권

* 학교 수업 불참 강요
금지 및 학습권 보호



안전

* 보건상 또는
안전상 위험 강요 금지

”

노동시간 제한 세분화 · 강화

* 아동 · 청소년의 노동시간 (용역제공시간) 제한을 보다 세분화하여 강화했습니다.

	현행	개정안
만 15세 이상	주 40시간 이내	주 35시간 이내
만 12~14세	주 35시간 이내	주 30시간 이내
만 12세 미만	주 35시간 이내	주 25시간 이내

선정적 표현 및 과다 노출 등의 강요 금지

* 안전상 위험에도 촬영 등을 강행하거나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나 학습권 침해 등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.



폭행 · 폭언, 성희롱 등 금지

* 촬영 등을 할 때, 폭행 · 폭언이나 성희롱 등 정신적 ·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
보다 명시적으로 금지하여
촬영 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
보다 최소화 합니다.



출처: 매일경제

청소년 인권 보호관 신설

* 촬영현장에서 아동 ·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
인권 보장을 감독하기 위해

청소년인권보호관을 배치(지정)하여
관련 피해 발생시 신고와
필요시 문체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.



출처: 경향신문

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루어질때까지! ●

카메라 속 아동·청소년은 소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.
아동·청소년 배우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루어질때까지
많은 관심 & 응원 부탁드립니다!

